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31호 2020. 5. 4.(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예천군 조례 제2399호)
-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00호)

공 고

-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0-683호)
-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0-684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4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99호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삼강문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천군 삼강문화단지”란 강문화전시관, 삼강주막, 보부상문화 체험촌, 캠핑장, 종합안내센터, 생태공원, 상가 및 숙박시설, 기타 부대 시설을 포함한 시설과 부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예천군수로부터 삼강문화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예천군 삼강문화단지(이하 “삼강문화단지”라 한다)는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109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삼강문화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강문화전시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강문화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날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근로자의 날, 12월 3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관하고 그 다음 개관일을 휴관일로 한다.
3. 전시관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
4.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미리 삼강문화단지 홈페이지 등에 휴관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의 징수) 전시관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

다)에게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한다.

제7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면제

가. 만2세 이하의 영유아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대구성원

마.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주민

바.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10인 이상의 단체관람인 경우 100분의 20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시간 및 매표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아래와 같다.

4월 ~ 10월	11월 ~ 3월
10:00 ~ 17:30	10:00 ~ 17:00

②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시작 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 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 및 시설 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시관의 관람 및 시설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음주로 인하여 전시물과 그 밖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한 물품 또는 타인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군수가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행위가 허가된 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흡연, 음주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관람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1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군수는 관람자의 편리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

하여 전시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 판매점
3. 예천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3장 캠핑장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모빌홈, 오토캠핑장, 관리사무실, 화장실, 샤워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13조(이용신청 및 이용료 납부) ① 캠핑장의 이용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캠핑장 예약정보시스템(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전에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일 전날까지 예약되지 아니하거나 예약이 취소된 경우 이용일 당일에 직접 이용신청 할 수 있다.

②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 이용일이 속한 달(月)의 전 달 1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 시작 시간 등 예약 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

③ 예약한 날 다음날 18:00까지 이용료 전액을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거나 카드결제 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되며, 캠핑장 이용일 전날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된다. 다만, 각급 학교 및 단체·기관 등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한 내 이용료 미 입금 시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시설이용료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후 별표 3의 시설 이용권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약시스템을 통해 이용신청을 한 이용자는 이용일 당일에 시설 이용권을 발부받아야 한다.

② 별표 3의 시설 이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 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30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6. 다자녀가정의 세대구성원
7.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료의 게시) 군수는 이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4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8조(시설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캠핑장 홈페이지 또는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이용제한 기간 및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되는 등 공중에 위해(危害)가 될 수 있는 경우
4. 별표 5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시설 이용권의 양도 및 대여 금지) 시설 이용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별표 5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

며,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시설의 위탁

제21조(시설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삼강문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삼강문화단지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자격 및 기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2조(위탁의 내용) ① 위탁내용, 위탁조건 등의 사항은 서면으로 군수와 수탁자 간 협약으로 정하며,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인 시설(이하 이 장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며 운영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의 유지·관리
2.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및 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3. 시설 주변 환경 보호, 관리 및 각종 편의 제공
4.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홍보
5. 그 밖에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조사의 협조 및 보고, 서류 제출 등

제24조(수탁자의 금지 행위)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시설의 임대 및 사용권 허용 행위
3. 시설의 원상(原象)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제2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4조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보험 가입)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 및 재산손실 등을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손해배상) 삼강문화단지 내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람은 이를 원상회복시키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예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강문화전시관 관람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관 랑 료 (개인)	비 고
소 인 / 청소년	2,000	만3세이상~만19세이하
대 인	3,000	만20세 이상

● 관람료 감면

(단위 : %)

감 면 대 상	감 면 율	비고
만2세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삼강리 주민	100	
예천군민	50	
단체(10인 이상)	20	

[별표 2]

캠핑장 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별		이용시간	성 수 기	비 수 기		비 고
				주말 공휴일	평 일	
오토 캠핑		1면/1일	40,000	30,000	20,000	
모 빌 홈	일반 형	1면/1일	130,000	100,000	80,000	
	필로티 형	1면/1일	150,000	120,000	100,000	

<비 고>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1.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시작일 기준)

가. 평 일 : 일요일~목요일

나. 주말·공휴일 :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

2. 이 용 일 : 1일(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당일(09:00~18:00)

3. 퇴실시간 초과시

(※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불가, 추가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산정)

가. 오토캠핑 : 시간당 2,000원 추가, 3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나. 모 빌 홈 : 시간당 10,000원 추가, 3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이용료 감면

(단위 : %)

감 면 대 상	감 면 율	비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관내 초·중·고 수련활동참여자, 다자녀가정, 예천 군민	30	

[별표 3]

캠핑장 시설 이용권(제14조 관련)

No. -	No. -
캠핑장 시설 이용권(원부)	캠핑장 시설 이용권(이용자보관용)
• 이 용 료 : ₩ (금 원)	• 이 용 료 : ₩ (금 원)
• 이용시설 :	• 이용시설 :
• 이용기간 : ~	• 이용기간 : ~
• 이 용 자	• 이 용 자
☐ 주 소 :	☐ 주 소 :
☐ 성 명 : 외 명	☐ 성 명 : 외 명
위와 같이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였음	위와 같이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였음
년 월 일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예 천 군 수 (인)

[별표 4]

캠핑장 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제17조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비 고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이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선납금액 반환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 반환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50 반환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24시간 이전)	선납금액 100분의 20 반환	
예약·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자의 사정으 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적용

※ 예약자가 이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본다.

캠핑장 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제18조 관련)

이 곳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이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캠핑장 이용자 수칙 미 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실조치 됩니다.
2. 이용시간은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입니다.
3. 시설 이용료는 정수 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4. 장 소
 - 배정된 오토캠핑장 및 모빌 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취사는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시설 외에는 이용을 금합니다.
5. 차량이용
 - 자동차의 출입은 23:00부터 07:00까지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6. 소 음
 - 소음이 심하지 않게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노래방 기기 사용은 일절 불가합니다.
 -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7. 위 생
 - 폐수 및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분리 배출하여야 합니다.
8. 애완견
 - 모든 애완견은 목줄 착용 및 배변봉투를 지참해 오셔야 합니다.
9. 화재와 사고
 - 캠핑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캠핑장 내 불꽃놀이, 캠프파이어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10. 전기시설
 -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구(1000w 이상) 사용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인하여 캠핑장 전체의 전기가 다운 될 염려가 있으므로 부득이 사용에 제한을 두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1.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파손 등에 대하여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2. 긴급사태
 - 호우강풍 등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

예천군 삼강문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삼강문화단지 일원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삼강문화단지의 위치(제1조 ~ 제3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삼강문화단지는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109번지 일원에 둔

나. 강문화전시관의 운영(제5조 ~ 제11조)

○ 개관 및 휴관

- 개관일 : 휴관일을 제외한 매일(10:00~17:3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및 추석당일, 근로자의 날,
12월31일

○ 관람료 등 각종 운영에 관한 규정

- 관람료 : 소인 및 청소년 2,000원, 성인 3,000원

- 관람료의 감면

· 전액감면 : 만2세 이하의 영유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100분의 50 감면 : 예천군민

· 100분의 20 감면 : 10인 이상의 단체관람자

다. 캠핑장의 운영(제12조 ~ 제20조)

○ 이용료 등 각종 시설이용에 관한 규정

- 이용료(성수기 기준)

· 오토캠핑장 : 40,000원

· 모빌홈 : 일반형 130,000원, 필로티형 150,000원

- 이용료의 감면

· 100분의 30 감면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예천군민 등

라. 시설의 위탁(제21조 ~ 제27조)

○ 시설의 관리위탁 및 대상 규정

-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 위탁의 내용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5월 4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00호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라 함은”은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을 “군수는 소상공인의”로, “위한 사업은”을 “위하여”로, “호와 같다”를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카드수수료 및 긴급생계비 등 경영안정 자금 지원. 이 경우 제18조제6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기타 위와 유사한 것으로”를 “그 밖의 소상공인”으로 한다.

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해”로 하며, “권장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4조 중 “주소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을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내용 추가 및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원내용 추가 신설 및 내용변경(제3조제4호 및 제5호)

-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카드수수료 및 긴급생계비 등 경영안정 자금 지원(이 경우 제18조제6호 적용 제외)
- 그 밖의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지원대상자 범위 기준에서 거주 및 영업 유지기간 삭제를 통하여 지원대상 확대(제4조)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일부감면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심각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추가

(안 제38조제1항제3호, 제8호·제9호)

- 재난위기경보 중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자연재난 등 피해지역 긴급 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급수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환경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2100@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3) 팩스 : 054-650-63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전화: 054-650-63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감면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면이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심각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8.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9. 자연재난 등 피해지역 긴급 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급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 <u>. 이 경우 2개 이상의 감면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면이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u>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심각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8.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u><신설></u>	9. 자연재난 등 피해지역 긴급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급수
8. (생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예 천 군 수

1. 규칙명 :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일부감면과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심각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에 관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감면사항 규정(안 제35조)

- 심각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 사용요금의 2분의 1 이내 감면 (6개월 이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 사용요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12개월 이내)

나.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사항 규정(안 제36조의7 신설)

- 가정용 1단계요금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다. 자연재해 등 긴급 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급수 감면사항 규정
(안 제36조의8 신설)

- 사용요금 전액 감면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환경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2100@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3) 팩스 : 054-650-63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전화: 054-650-63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재난지역 등 요금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용요금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사용요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 복구 시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제36조의6 중 “제38조제8호”를 “제38조제10호”로 한다.

제36조의7 및 제36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7(다자녀가구 요금감면) ① 조례 제38조제8호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하여는 가정용 1단계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의8(긴급복구용 요금감면) 조례 제38조제9호에 따라 긴급 복구용으로

사용되는 급수는 사용요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4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수 용 가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수용가번호				전화번호		
감면사유	국민기초생활 수 급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회복지 시 설	다자녀 가 구	기타	
지정일자				세대원수	명	
		담당공무원 확인	직급	성명	(인)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7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 의 관계 :)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해당 감면사유에 ○표 한 후 읍·면행정복지센터 각 담당공무원 확인 ※ 이주 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재난지역 요금감면)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지역은 사용요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구 시까지 최고 1년간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재난지역 등 요금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재난 위기정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용요금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②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사용요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 복구 시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제36조의6(모범업소 요금감면) 조례 제38조제8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47조에 의해 지정된 모범업소는 해당업종 월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단, 구경별 정액요금은 제외)	제36조의6(모범업소 요금감면) -- -- 제38조제10호----- ----- ----- ----- ----- ----- -----
<신설>	제36조의7(다자녀가구 요금감면)

<신 설>

제41조(과태료) 조례 제44조에 따
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기준
은 별표와 같다.

① 조례 제38조제8호에 따라 다
자녀가구에 대하여는 가정용 1
단계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
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요금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의8(긴급복구용 요금감면)
조례 제38조제9호에 따라 긴급
복구용으로 사용되는 급수는 사
용요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삭 제>